

##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①이 조례는 법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 신 구조 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2조 (적용범위) ①이 조례는 법2조 제3항 제2호의 공무원중 <u>읍장, 면장 및 시의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</u> (이하 “<u>별정직공무원</u>” 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</p>	<p>제2조 (적용범위) ①이 조례는 법2조 제3항 제2호의 공무원중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.</p>